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 정 안 전 부 (재 정 정 책 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본문과 [별표]에 규정된 투자심사 면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심사 및 타당성조사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11조)

- 1) 정기심사를 확대(3회 → 4회)하여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 2) 투자심사 확대에 따른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3회 → 4회)

나. 투자심사 면제사업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 1) 국가재정법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 유형별로 정비
- 2) 면제사업 신설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 3) 투자심사 면제사업 [별표]에 대해 일몰제 도입

다. 협의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현행 협의면제 요건인 ‘부처간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심의·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으로 개정하여 면제 요건을 명확화

라. 지방채 발행계획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호)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 중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체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 추가 확대 가능

마. 재심사 시점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안 제6조제3호)

-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 실시설계 및 변경, 각종 행정절차 등 이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바. 종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 종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인용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7. ~ 6. 17.) 예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5. 투자심사에 준하는 심의를 거친 다음 각호의 사업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 나.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라.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0호 나목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다음 각호의 재난예방사업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

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라.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7.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매 사업

8.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9.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개정된 부
령의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면제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
무원이 참여하여 심의·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제2항 본문 중 “3회”를 “4회”로, “3월 31일”을 “2월 28일”로, “6월
30일”을 “5월 31일”로, “심사는 10월 31일”을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
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
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을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로, “8월 31일”을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제3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이상”을 “4년이상”으로 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당초 계획된 지방채발행액의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재원의 50퍼센트를 초과(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60퍼센트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제11조제1항 중 “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월 31일”을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이 영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제3조제2항제9호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농어촌 개발 및 육성	
가.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획재정부)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다.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 (환경부)
마. 받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바.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2. 특수목적의 국가지원 도로 정비사업	
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국토교통부)
나.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 (국토교통부)
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3. 단순개량 및 환경 개선 사업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 (환경부)
	「수도법」 (환경부)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 사업 4. 지역개발 및 재생사업 가. 지역개발사업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국가산업단지로 한 정한다) 다.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 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 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국토교통부)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1. <u>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u>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u>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가. <u>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u>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매 사업	
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마.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
된 사업

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
어 있는 토지의 매입 사업
사.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아.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신 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5. 투자심사에 준하는 심의를 거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나.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라.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0호 나목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다음 각호의 재난예방사업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	<u>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 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 업</u> <u>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 수</u> <u>라.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u> <u>7.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매 사업</u> <u>8.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 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u> <u>9.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개정된 부령의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면제 필요성을 검토 하여 정한다.</u> <u>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심의 · 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 행해야하는 사업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 업</u>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현
---	--

략)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행과 같음)

②----- 4회-----

----- 2월 28일-----
-- 5월 31일-----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 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 6. (생략)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

ㄱ.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

5. · 6. (현행과 같음)

제6조(재심사) -----

다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
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
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
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
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 6. (생략)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
당성 조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
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
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
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
지, 3차 의뢰는 8월 31일까지 행

-----.

1. (현행과 같음)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당초 계획된 지방채발행액의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
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재
원의 50퍼센트를 초과(단, 시
·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 시
·군·구는 60퍼센트 초과)하
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3. ----- 4년이상 -----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
----- 4회-----

-----.

② -----

----- 7월 31일까지, 4차

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의뢰는 10월 15일</u>----- ----- -----. ----- -----. ③ (현행과 같음)
---	--